

瑞山市議會議員議政活動費・會議手當및旅費의支給에
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

審 查 報 告 書

運 營 委 員 會
2000. 2. 7

1. 審 查 經 過

- 가. 發意日字 : 2000. 2. 1
- 나. 發 意 者 : 가대현 의원의 10인
- 다. 回附日字 : 2000. 2. 1
- 라. 上程日字 : 2000. 2. 7

2. 提 案 說 明 要 旨 (提 案 說 明 : 賈 大 鉉 議 員)

가. 提 案 理 由

- 지방자치법과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변경하고 의정활동비 금액등을 이에 맞도록 조정하려는 것임.

나. 主 要 骨 子

- 「회의수당」을 「회기수당」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일 50천원에서 일 70천원으로 상향조정하며,
- 회기수당의 지급은 회기일수에 일액을 곱한 금액을 매회기마다 지급하되, 회기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 매1일에 대하여 일액을 감액하여 지급토록 하고,
- 의정활동비를 월 350천원에서 월 550천원으로 상향조정함.

3. 專門委員 檢討意見 要旨

-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(制定)된 서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·회의수당및여비의 지급에관한조례로써,
- 본 조례와 관련된 법령이 개정공포됨에 따라서 본 조례도 개정된 법령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, 개정안대로 개정하여도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조례운영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4. 主要質疑 및 答辯要旨 : 생략

5. 討論 및 少數意見 : 없었음.

6. 審査結果 : 원안대로 가결

의안번호	제 135 호
의결 년 월 일	2000. . . (제 회)

서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 · 회의수당및 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발 의 자	가대현 의원외 10인
발의년월일	2000. 2. 1.

서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 · 회의수당및 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안

의안
번호 제135호

발의년월일 : 2000. 2. 1
발 의 자 : 가대현의원외 10인

1. 제안이유

지방자치법과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변경하고 의정활동비 등의 금액 등을 이에 맞도록 조정하려는 것임.

2. 주요골자

- 가. 「회의수당」을 「회기수당」으로 용어를 변경함(안 제1조).
- 나. 의정활동비를 월 350,000원에서 월 550,000원으로 상향 조정함(안 제2조).
- 다. 회기수당의 지급은 회기일수에 일액을 곱한 금액을 매회기마다 지급하되, 회기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 매1일에 대하여 일액을 감하여 지급하도록 함(안 제3조).
- 라.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하여 일 50,000원에서 일 70,000원으로 상향 조정함(안 제3조).

3. 참고사항

○ 관계법령

- 지방자치법 제32조(의원의 의정활동비등)
-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(의정활동비 · 회의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)
- 공무원여비규정(국외여행정액표)
- 서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 · 회의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

서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 · 회의수당및 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서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 · 회의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서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 · 회의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”를 “서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”로 한다.

제1조중 “의정활동비와 회의수당 및 여비”를 “의정활동비와 회기수당 및 여비”로 한다.

제2조제1항중 “의정활동비는 월 350,000원”을 “의정활동비는 월 550,000원”으로 한다.

제3조제1항 및 동조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 회기수당(원격지회의 출석비를 포함한다)은 회기일수에 일액을 곱한 금액을 회기마다 지급하되 회기중 의회의 회의(위원회의 회의를 포함한다)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출석하지 아니한 매1일에 대하여 일액을 감하여 지급한다.

② 의원에게 지급하는 회기수당은 일 70,000원으로 한다.

별표 2중 의장부의장 및 의원의 현지교통비(1일당)란 및 숙박비(1야당)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구 분	현지교통비 (1일당)	숙박비 (1야당)
의 장 부의장	10,000	41,000
의 원	10,000	22,000

별표 3중 의장부의장 및 의원의 숙박비(1야당)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구 분	숙박비 (1야당)
의 장 부의장	가등급:137 나등급: 99 다등급: 76 라등급: 65
의 원	가등급:120 나등급: 78 다등급: 58 라등급: 51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,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	행	개	정	안
<p><u>서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·회의수당및 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</u></p> 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남도 서산시의회(이하 "의회"라 한다)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와 <u>회의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</u>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의정활동비 지급) ①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는 <u>월350,000원</u>으로 한다. ②(생략) ③(생략)</p> <p>제3조(회의수당지급) ①회의수당(원격지회의출석비를 포함한다)은 회기중 의원이 <u>의회의 회의(위원회 회의 포함한다)</u>에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. 다만,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이 회기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휴일에도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 ②의원에게 지급하는 <u>회의수당은 출석일수 1일당 50,000원</u>으로 한다. ③(생략)</p>		<p><u>서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 한조례</u></p> <p>제1조(목적) ----- ----- ----- ----- <u>회기수당</u>----- -----</p> <p>제2조(의정활동비 지급) ① ----- ----- <u>월550,000원</u>----- ②(현행과 같음) ③(현행과 같음)</p> <p>제3조(회기수당지급) ①회기수당(원격지회의출석비를 포함한다)은 회기일수에 일액을 곱한 금액을 회기마다 지급하되 회기중 의회의 회의(위원회 회의 포함한다)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출석하지 아니한 매1일에 대하여 일액을 감하여 지급한다. ②의원에게 지급하는 회기수당은 <u>일 70,000원</u>으로 한다. ③(현행과 같음)</p>		

현		행								
[별표2] 국내여비지급기준표(제5조제2항관련)										
구 의 부 의 원	철도 운임 (생략)	선박 운임 (생략)	항공 운임 (생략)	자동차 운임 (생략)	현지 교통비 (1일당)	숙박비 (1야당)	식비 (1일당)	(단위:원)		
								6,500	37,500	(생략)
								6,500	18,000	(생략)
[별표3] 국외여비지급기준표(제5조제3항관련)										
구 의 부 의 원	항공 운임 (생략)	일비 (1일당)	숙박비 (1야당)	식비 (1일당)	15일 미만	30일 미만	30일 이상	(단위:미불화)		
								(생략)	(생략)	(생략)
								(생략)	(생략)	(생략)

안		개								
[별표2] 국내여비지급기준표(제5조제2항관련)										
구 의 부 의 원	철도 운임 (현행과 같음)	선박 운임 (현행과 같음)	항공 운임 (현행과 같음)	자동차 운임 (현행과 같음)	현지 교통비 (1일당)	숙박비 (1야당)	식비 (1일당)	(단위:원)		
								10,000	41,000	(현행과 같음)
								10,000	22,000	(현행과 같음)
[별표3] 국외여비지급기준표(제5조제3항관련)										
구 의 부 의 원	항공 운임 (현행과 같음)	일비 (1일당)	숙박비 (1야당)	식비 (1일당)	15일 미만	30일 미만	30일 이상	(단위:미불화)		
								(현행과 같음)	(현행과 같음)	(현행과 같음)
								(현행과 같음)	(현행과 같음)	(현행과 같음)